

인권정보자료실
CPh1.72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장과 인권문제

제 . 58 . 차 . 유 . 엔 . 인 . 권 . 위 . 원 . 회



인권정보자료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한국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제 . 58 . 차 . 유 . 엔 . 인 . 권 . 위 . 원 . 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순서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 결의와 한국정부의 책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의 주요 결의

-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주요 결의

-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한국의 병역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국방부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과 위현여부제청신청

일부 의원의 입법안 제출 시도

국민여론의 변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결론

〈부록〉

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헌법조항 병역법 및 군영법조항

②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사람들의 명단(1,640명)

③ 가석방 심사기준

④ 국방부 발표문 :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

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성명서

⑥ 선언문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1. 서론

한국은 군사 독재정권 하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왔고, 남북의 분단상황은 병역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관행을 존속시켜왔다. 이에 따라 군대와 관련된 인권 문제는 최근까지 국민들의 관심밖에 놓여 있었고, 종교적 가르침과 양심에 따라 군대를 거부하는 국내의 사례나 외국의 예도 일반인들에게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한국이 유엔의 회원국이 되고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이후 한국 정부는 유엔의 인권 관계 결의를 존중해야 할 의무와 함께 정기적으로 국내의 인권 상황을 유엔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도,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한국의 실상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도 위와 같은 한국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군대 문제를 중요한 인권 문제의 하나로 보지 못해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 하여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유엔의 결의나 국제인권규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2001년 초, 놀랍도록 많은 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 동안 처벌을 받아왔고 현재도 대개 3년형의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실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소수자 인권 문제로 부각되었다. 한국의 헌법에 의하면 종교와 양심의 자유는 개인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국가에 의하여 보장받아야 하는데도,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해 왔다. 사회봉사의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병역법과 군형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예의 없이 중형의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재의 처벌 법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 행을 면할 수 없고 사회적으로도 회복하기 불가능한 불이익과 차별을 받게 된다. 이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법규만 존재하고 대체복무제도가 전무한 실정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는 중요한 인권의 하나로 보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나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관련 결의 또는 권고나 의견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시급히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현재의 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시민적 권리로 확인해 온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 등의 추이를 살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의 실상을 소개한 후,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를 기술하기로 한다.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 결의와 한국정부의 책임

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유엔의 주요 결의

(1) 유엔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주요 결의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7년 채택한 결의 46호(E/CN.1987/60)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가가 존중해야 할 인권으로 선언하였다. 이 결의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각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어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1989년 채택한 결의 59호(E/CN.4/1989/59, Preamble, para.1)에서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제18조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이하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엔 헌장 및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인권의 하나로 수용하도록 다시 한번 각국에 강조하였다.

또한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3년 결의 84호(E/CN.4/1993/122)에서 이전의 결의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병역거부가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국내법 체계 속에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을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5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자유권규약 제18조의 해석에 관하여 1993년에 결의한 “일반의견(General Comment)”의 내용을 반영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그들이 가진 신념의 특성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의하였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4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마그나 카르타’라고도 지칭되는 77호 결의 (E/CN.4/RES/1998/77, Preamble)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인도주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 또는 양심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이미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있다.

(나)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없는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특정한 사안에서 타당한 자 여부를 결정할 임무를 맡을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양심적 거부의 이유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도입하되, 그 대체복무는 공익적이고, 징벌적 성격이 아닌 비전투적 또는 민간적 임무의 성격을 띤 것이어야 한다.

(라) 국가는 양심적 거부자를 구금하거나 반복적으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경제·사회·문화·시민 또는 정치적 권리 등의 측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박해를 피해 자국을 떠난 사람들은 난민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

(사)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신청하는 데에 대한 정보가 병역문제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0년 4월 20일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의제에 관하여 심의를 계속한 결과

결의 34호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1998년에 채택한 77호 결의안의 관점에서 자국의 현행법과 관행을 점검하도록 촉구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정부, 유엔기구 및 NGO로부터 정보를 모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모범적 실천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2년에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2)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의 권고

자유권규약에 따라 설치된 유엔 인권이사회도 상술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와 마찬가지로 각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규약이 규정하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3년에 채택한 “일반의견(General Comment)”에서 양심적 따른 병역거부권이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위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도출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공표하였다(U.N. Hum. Rts. Comm., General Comment 22[48] (art.18), Para.11).

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정부의 책임과 의무

한국의 헌법 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제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제법 질서존중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국은 1990년 4월 자유권규약에 가입하였고, 1991년 9월 유엔회원국이 되었으므로 한국정부는 일반적으로 유엔의 인권관계 결의를 존중하고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권규약 등이 규정하는 인권보호에 관한 각종 책임을 이해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2차 정기보고서에서, “헌법 6조 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결·공포된 조약은 …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자유권규약은 국회의 동의 아래 제결·공포되었으므로, 추가 입법 조치가 필요 없이 국내법적 권원(the authority of domestic law)을 갖는다 … 규약의 비준에 앞서 제정된 법률이 규약의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규약이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행정부와 법원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 인권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자유권규약이 국내법적 입법절차 없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CPR/C/114/Add.1, Second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6, 20/08/98, para.9). 그리고 이때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的 의미에 관하여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그 의미를 밝힌 바 있다. 즉 한국정부는 위 최초보고서에서 국내법규와 고문방지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일반원칙에 따라 ‘후법 우선의 원칙’(the lex posterior rule)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the principle of the precedence of special law)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제인권조약은 헌법보다는 하위이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는 대등한 효력을 가지게 된

다(CAT/C/32/Add.1, Initial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1996, 30/05/96, para.20).

그러나 자유권규약에 대한 2차 정기보고서에서 한국정부는 또한 “한국에서 제정된 어떠한 법률도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만약 그러한 법률이 있다면 위헌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을 밝혔으므로(위 Second periodic reports, para.10), 이 원칙을 적용할 때, 자유권규약은 한국의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국내법적 효력이 되며, 자유권규약에 어긋나는 국내법률은 규약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인권을 보장하고, 그 보장과 관련되는 유엔 인권위원회 또는 유엔 인권이사회와의 결의나 권고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엔 인권이사회는 “일반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자유권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된다는 사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결의하였으므로, 한국정부는 마땅히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정 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의 방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처벌 등의 유형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정부는 위에서 인용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2000년 34호 결의의 찬성국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의 법률과 관행을 유엔 인권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한국에서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예외 없이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아왔으며, 수감생활을 미친 후 적절한 직업을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차별을 받아왔다. 이 사실은 한국정부가 국제인권규약 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나 인권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준다.

3.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가. 한국의 병역 제도

한국은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헌법 39조 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과 병역법 3조 1항의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병역은 현역, 보충역, 예비역 등으로 구분된다.

현역은 6주의 기본군사훈련을 포함하여 24~30개월을 복무하며, 보충역은 병역법이 정하는 신체 결함자 또

는 학력 미달자로 분류되어 편성되거나,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을 가진 자들이 보충역을 지원할 수 있다. 보충역의 복무 기간은 4주의 기본 군사훈련을 포함하여 32~36개월이다.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예비역은 사병의 경우 제대 후 8년간이다. 병역의 면제는 병역법이 정하는 신체 결함, 학력 미달이나 가사 사정에 국한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면제 조항은 없다.

한국정부에서 발간한 지난 2000년의 국방 백서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인구 4,800만 명 중 현역 복무자는 69만 명이고, 현역에 부적합한 신체 조건이나 특수한 기능 등으로 보충역에 배치되는 사람들은 대략 14만 명이다. 병무청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 징병 검사자 중 2.6%인 4,916명이 신체 결함, 학력 미달 등으로 정집이 면제되었다. 특수한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 요원 등을 제외하고는 신체결함여부나 학력의 기준 미달여부는 전적으로 병무청에서 심사한다. 따라서 특수한 자격이나 기능도 없으며 현역에 적합할 정도의 학력이 있고 신체 결함이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보충역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병역법 88조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 44조는 비전시하에서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실상

2001년 12월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91명의 사람을 포함하여 1,64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국 교도소에 복역중이다.¹⁾ 이들의 복역기간이 대개 3년 가량임을 고려할 때, 최근까지 매년 600명 가까운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감옥을 선택해 온 셈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는 일제 식민지 시절이던 1939년 최초의 처벌 기록이 보고된 이래 지금까지 62년 간 매년 투옥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금까지 처벌된 숫자가 1만 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경축일을 비롯하여 통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가석방의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매년 몇 차례씩 취해졌던 사면·복권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도 전과의 명예를 안고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출소 후 전과로 인해 공무원 임용 자격이 없으며, 민간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원 조회에서 탈락하는 등의 사회적 차별을 경험한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여호와증인 신도들이며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신도 등도 소수 존재한다. 2001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국방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라 1992년부터 2000년까지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한 사람들의 수를 표와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1, 그림1과 같다.

1) 교도소에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명단은 부록 2로 첨부되어 있다.

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
1992년	220
1993년	277
1994년	233
1995년	427
1996년	355
1997년	403
1998년	474
1999년	513
2000년	642

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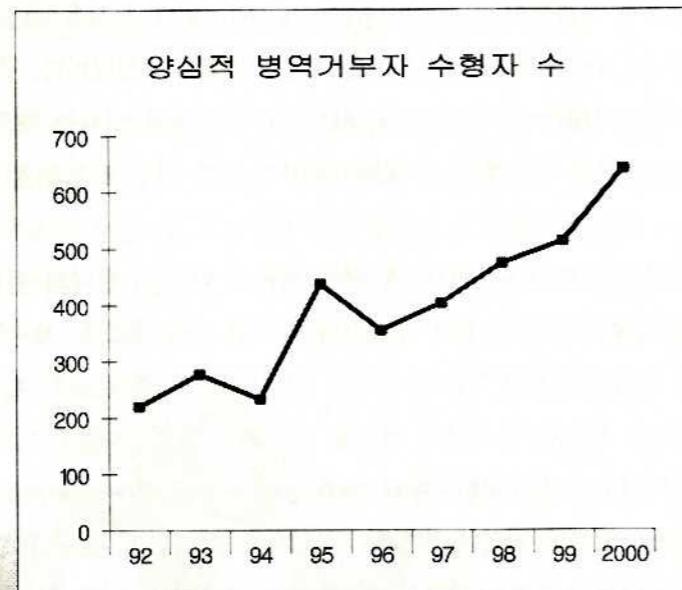


그림1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들 중 80%가 지난 2001년 중반 이전에 군사 재판을 통해 군형법 44조에 근거한 항명죄로 법정 최고형인 3년형을 기계적으로 선고받았다. 2001년 중반 이후로는 대부분이 군 입대 자체를 거부하여 군형법 대신 병역법이 적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간법정을 통해 재판을 받아 18~2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현재 병역법상으로는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야 병역이 면제되기 때문에, 민간 법원에서는 대체로 1년 6개월의 실형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한국의 헌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지 아니한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인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개 수사 개시 때부터 구속되어 있다. 2001년 12월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중인 1,640명의 형량별 분포를 표와 그림으로 표시하면 아래 표2, 그림2와 같다.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가족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 표3이 그 숫자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량별 분포

형량(개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수
36	1,314
30	25
24	30
18	165
미결	106
계	1,640

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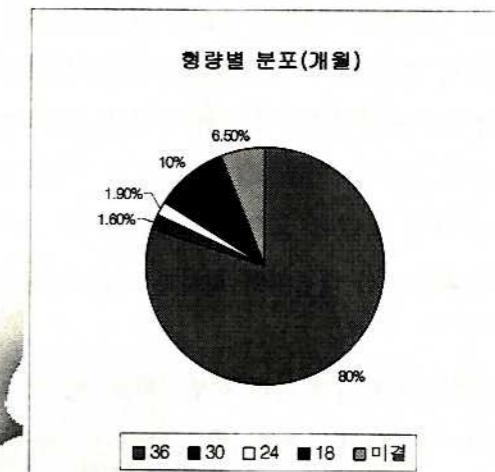


그림2

[표 3. 가족 중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 수자]

가족 중 투옥자	아버지	아버지+ 형제1명	아버지+ 형제2명	형제1명	형제2명	형제3명	총계
수감자의 수	124	31	3	251	21	3	433

현재 복역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가석방제도의 적용 문제이다. 일반 재소자들과 달리 '여호와의 증인'인 병역거부자는 가석방 심사기준²⁾에서 특별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심사되고 있으며, 교도소 내에서 대표적인 1급 모범수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통상의 경우 50% 이상 형기를 복역하면 가석방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하여, 반드시 27개월(3년형의 75% 이상 복역)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얼마 전까지 26개월을 복무해야 했던 현역복무자의 복무기간보다 길게 복역하도록 의도적으로 가석방 신청기간을 장기화한 것으로서,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감자들은 외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교직자의 방문을 받는 등 종교활동이 허용되고 있으나, 병역거부로 수감 중인 '여호와의 증인'들은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였다는 이유로 일체의 종교활동을 허용 받지 못하고 있다.

다. 국방부 입장

국방부는 2001년 10월 23일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³⁾을 발표하여 병역의 의무가 민주국

2) 부록 3 참조

3) 부록 4 참조

가 수호를 위한 기본적 합의임을 강조하고,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대체복무제도는 불가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또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가 시행되었을 때 국방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병역기피의 확산으로 남북의 대치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반대이유로 덧붙였다.

라.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과 위헌여부 제청신청

한국에서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대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최고기관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969년, 1985년, 1992년 각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행위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원들은 예외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여 왔다. 다만 2002년 1월 2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병역거부를 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이경수씨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병역법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위헌여부 심판제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 진행을 중단하고 이경수씨를 보석으로 석방하였다.

마. 일부 의원의 입법안 제출 시도

지난 해 병역거부자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론화되자 민주당의 천정배, 한나라당의 장영달 의원이 각각 별도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로 입법안 제출을 유보하였다. 현재 국회에서 대체복무제도 입법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바. 국민 여론의 변화

병역거부문제뿐만 아니라 국기경례 및 수혈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하여 그 동안 기독교계의 이단으로 보아 온 것이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였다. 그러나 만여 명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동정심이 국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수 이상의 시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서 국방부는 별론으로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보장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서 가장 큰 반대세력은 보수 기독교단이다. 2001년 6월 1일에는 한국의 보수 기독교단을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단에 대한 특혜 입법이라는 반대 성명⁴⁾을 발표하였다. 그 밖의 종교계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긍정적인 입장은 가지고 있고, 불교의 경우 2001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을 계기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2001년 봄 이후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대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대체복무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남북 분단상황에 의한 안보의 위협, 군복무에 대한 형평성 등을 반대 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현재 병역거부를 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권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02년 2월 4일 학계, 정치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저명한 인사들을 포함하여 1,552명이 서명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이 발표되었다⁵⁾. 이들은 “1000인 선언”에서 한국정부가 조속히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사.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2001년 3월에 있었던 군대와 인권문제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 토론회에서 많은 수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복역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듣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후 병역거부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각종 토론회, 간담회 등을 조직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대만과 독일에 대표자들을 보내 대체복무제도를 참관하기도 하였다. 또 법률가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02년 2월 4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평화인권연대, 전국불교운동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동성애자 인권연대 등 30개의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앞으로 연대회의는 국회 입법을 겨냥한 대체복무제도 법안 마련과 입영을 앞둔 청년들에 대한 상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를 알려나가는 작업, 국제연대를 통한 여론화 작업등의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4) 부록 5 참조

5) 부록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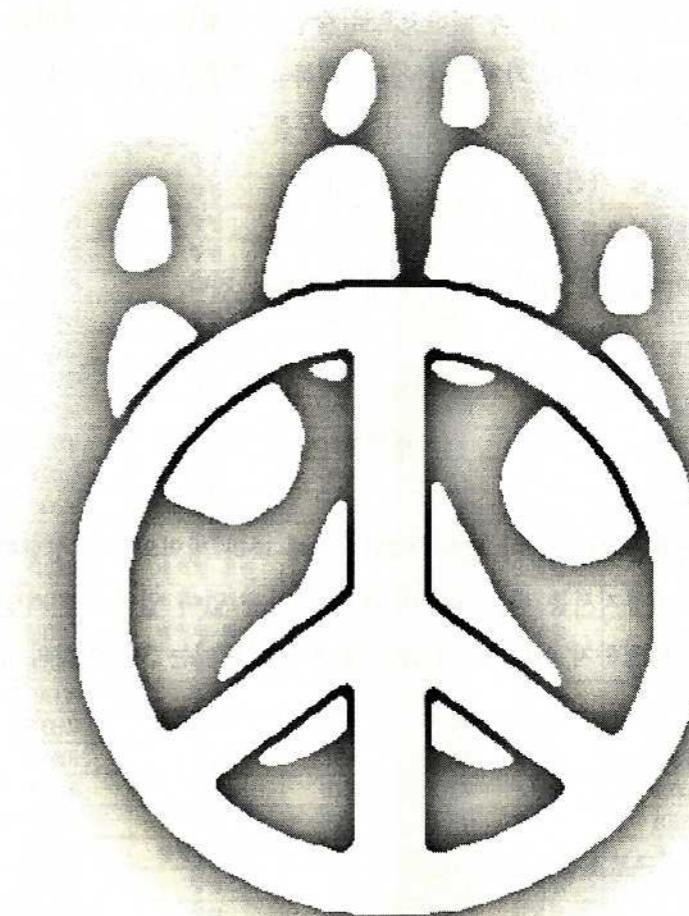
4. 결론

오랫동안 군사 정권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당해 온 한국은 1990년대 초 이후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차 민주주의 과정을 밟아 가고 있다. 2001년 11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장차 제반 인권 분야의 질적인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또 국민에게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병역의무 이행의 한 방법으로 적절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방의 의무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예외 없이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여 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하고 헌법상 마땅히 누려야 할 최고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훼손 당해왔다. 현재의 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이익과 이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중범죄인으로 취급해 온 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는 인권의 하나로 보호하도록 각국 정부에 촉구해 온 유엔 인권위원회의 거듭된 결의나 유엔 인권이사회와 의견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국의 실상을 유엔 인권 기구에 보고하여 유엔이 확립해 온 국제인권규범의 관점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의 법제상 한국 정부가 양심적 거부자를 투옥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일반적 병역의무 대신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회봉사형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은 현재 한국에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시급히 그 동안 유엔 인권위원회 등의 결의에서 촉구해 온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규를 폐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교도소 내에서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종교 활동 등과 관련하여 받아온 차별을 시정하고 적절하게 가석방을 실시하여 가능한 한 곧 구금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2001년 12월 불교신자이자 평화운동가인 오태양씨가 병역거부 선언을 하고 현역 입영을 거부함으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이제 범종교적, 전 국민적인 인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남북 대치 상황으로 인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우려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인 합의와 합리적인 제도마련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해 온 수많은 국가들의 모범적인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그 동안 독재정치 하에서 국민들의 의식을 지배해 온 군사주의에 기반 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 정부의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2000년 12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야말로 살상을 거부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가장 평화로운 사람들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노벨 평화상 수상에 걸맞은 한국정부의 인권 정책은 무엇보다도 한국정부가 외면해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부록 1>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헌법조항, 병역법 및 군형법 조항

헌법

- 6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 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88조 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소집 기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5일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전시근로소집은 2일

군형법

- 44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록 2>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명단(2001년 12월 20일 현재)

□ 기결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1	가명진	770321	항명	36월	41	강현우	770617	항명	36월
2	강경모	800525	항명	36월	42	강현천	800619	항명	36월
3	강경식	800912	항명	36월	43	강훈	800206	항명	36월
4	강경완	790411	항명	36월	44	고갑수	810114	항명	36월
5	강기홍	800822	항명	36월	45	고경욱	810605	병역법 위반	18월
6	강덕우	800425	항명	36월	46	고경탁	790712	항명	36월
7	강동우	791120	항명	36월	47	고구문	810111	항명	36월
8	강동주	801002	항명	36월	48	고낙원	801017	항명	30월
9	강래호	790705	항명	36월	49	고민석	800831	항명	36월
10	강만하	770914	항명	36월	50	고상민	790915	항명	36월
11	강명수	810512	병역법 위반	18월	51	고승주	790520	항명	36월
12	강명수	780929	항명	36월	52	고영재	780623	항명	36월
13	강명원	790129	항명	36월	53	고용희	790424	병역법 위반	18월
14	강명진	801026	병역법 위반	18월	54	고윤혁	790721	항명	36월
15	강민욱	800915	항명	36월	55	고은성	811115	병역법 위반	24월
16	강민욱	790516	항명	36월	56	고정권	810220	항명	36월
17	강병문	791014	항명	36월	57	고창부	800805	항명	36월
18	강봉균	810601	병역법 위반	18월	58	고필성	710908	항명	36월
19	강상규	810802	병역법 위반	24월	59	공민혁	810418	병역법 위반	18월
20	강상수	810313	병역법 위반	18월	60	공민호	810418	병역법 위반	18월
21	강석환	800307	항명	36월	61	공병훈	790925	항명	36월
22	강성복	791119	항명	36월	62	공봉준	790312	항명	36월
23	강성운	800607	항명	36월	63	곽동하	801207	항명	36월
24	강승태	810201	항명	36월	64	곽민호	790814	항명	36월
25	강승호	790105	항명	36월	65	곽수영	800613	항명	36월
26	강승환	800225	항명	36월	66	곽우재	801226	항명	36월
27	강용석	810516	병역법 위반	36월	67	곽재현	790429	항명	36월
28	강의모	800131	항명	36월	68	곽지현	800403	항명	36월
29	강인호	800507	항명	36월	69	구본진	810713	항명	36월
30	강일남	800212	항명	36월	70	구자범	800427	항명	36월
31	강종목	801217	항명	36월	71	구자윤	790805	항명	36월
32	강준혁	800522	항명	36월	72	구자홍	800925	항명	36월
33	강창호	770901	항명	36월	73	구현우	800820	항명	36월
34	강태승	791128	항명	36월	74	구현준	790511	항명	36월
35	강태호	800530	항명	36월	75	권기표	790620	항명	36월
36	강평석	800613	항명	36월	76	권기환	801008	항명	36월
37	강현규	800327	항명	36월	77	권기훈	770508	항명	36월
38	강현우	780816	병역법 위반	24월	78	권대현	800401	항명	36월
39	강현민	791116	항명	36월	79	권대호	800215	항명	36월
40	강현식	791024	항명	36월	80	권덕현	800117	항명	30월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81	권동영	810806	항명	36월	131	김달훈	801201	항명	36월
82	권명훈	800315	항명	36월	132	김대원	780822	항명	36월
83	권상민	800307	병역법 위반	24월	133	김대원	810822	항명	36월
84	권성진	791103	항명	36월	134	김대진	800430	항명	36월
85	권성호	790221	항명	36월	135	김대환	800223	항명	36월
86	권순식	801115	항명	36월	136	김덕	800208	항명	36월
87	권연상	810213	항명	36월	137	김덕상	781030	항명	36월
88	권영수	791117	항명	36월	138	김덕형	800502	항명	36월
89	권영현	810624	병역법 위반	18월	139	김덕환	790929	항명	36월
90	권오래	801225	항명	36월	140	김도기	810327	병역법 위반	18월
91	권오찬	790823	항명	36월	141	김도연	790815	항명	36월
92	권오창	810428	항명	36월	142	김도완	800710	항명	36월
93	권오천	810522	병역법 위반	24월	143	김도운	800212	항명	36월
94	권용화	790326	항명	36월	144	김도형	800712	항명	36월
95	권종건	791002	항명	36월	145	김도훈	810102	항명	36월
96	권진호	791126	항명	36월	146	김동국	801019	병역법 위반	18월
97	권혁준	790115	항명	36월	147	김동섭	790326	항명	36월
98	권현목	790611	항명	36월	148	김동옥	800628	항명	36월
99	권형진	790122	병역법 위반	24월	149	김동진	810722	병역법 위반	18월
100	권형필		병역법 위반	18월	150	김두현	790809	항명	36월
101	길기덕	781106	항명	36월	151	김두환	801015	항명	36월
102	길명기	811020	병역법 위반	18월	152	김래원	800209	항명	36월
103	김현	780421	항명	36월	153	김명석	800517	항명	36월
104	김현	790902	항명	36월	154	김명재	791102	항명	36월
105	김진	810102	병역법 위반	18월	155	김명철	780619	항명	36월
106	김호	791203	항명	36월	156	김명철	760114	항명	36월
107	김강산	790922	항명	36월	157	김명철	800526	항명	36월
108	김경락	800820	항명	36월	158	김무경	800410	항명	36월
109	김경인	791219	항명	36월	159	김무진	800820	항명	36월
110	김경일	791102	항명	36월	160	김민재	790413	항명	36월
111	김경제	800705	병역법 위반	18월	161	김민창	790521	항명	36월
112	김경철	800911	항명	36월	162	김민철	790415	항명	36월
113	김광훈	800419	항명	36월	163	김반석	710629	병역법 위반	18월
114	김구름	800811	항명	36월	164	김범규	790115	항명	30월
115	김국환	791227	항명	36월	165	김병배	801017	항명	36월
116	김군태	790917	항명	36월	166	김병승	790113	항명	36월
117	김권성	760724	항명	36월	167	김병주	790327	항명	36월
118	김규식	790429	항명	36월	168	김병훈	790727	항명	36월
119	김근영	810514	항명	30월	169	김봉규	790113	항명	36월
120	김근우	790610	항명	36월	170	김상갑	801124	항명	30월
121	김기덕	780380	항명	36월	171	김상기	791005	항명	36월
122	김기본	800520	항명	36월	172	김상민	800526	항명	36월
123	김기석	800803	항명	36월	173	김상완	790702	항명	36월
124	김기선	800210	항명	36월	174	김상욱	780629	항명	36월
125	김기정	790930	항명	36월	175	김상윤	770914	항명	36월
126	김기현	780629	항명	36월	176	김상주	780909	항명	36월
127	김기현	801121	항명	36월	177	김상환	800210	항명	36월
128	김기환	780320	항명	36월	178	김상훈	790409	항명	36월
129	김기훈	801202	항명	36월	179	김서호	800928	항명	36월
130	김남열	800407	항명	36월	180	김석기	801220	항명	36월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181	김석만	790108	항명	36월	231	김연길	790604	항명	36월
182	김선국	800115	항명	36월	232	김연직	780629	항명	36월
183	김선우	800703	항명	36월	233	김영	790709	항명	36월
184	김선펠	800613	항명	36월	234	김영민	790701	항명	36월
185	김설환	790525	항명	36월	235	김영민	800201	항명	36월
186	김성도	791013	항명	36월	236	김영범	810903	항명	36월
187	김성렬	771012	항명	36월	237	김영빈	781108	항명	36월
188	김성만	800516	항명	36월	238	김영신	800727	항명	36월
189	김성무	790623	항명	36월	239	김영윤	771227	항명	36월
190	김성민	800822	항명	36월	240	김영인	791115	항명	36월
191	김성수	790719	항명	36월	241	김영일	780313	항명	36월
192	김성우	750208	항명	36월	242	김영종	800206	항명	36월
193	김성옥	790831	항명	36월	243	김영준	810427	항명	36월
194	김성주	810329	병역법 위반	18월	244	김영진	780610	항명	36월
195	김성준	791114	항명	36월	245	김영초	790802	항명	36월
196	김성준	810604	병역법 위반	18월	246	김영현	790606	항명	36월
197	김성진	760916	항명	36월	247	김영화	800227	병역법 위반	18월
198	김성진	770625	항명	36월	248	김완호	790319	병역법 위반	18월
199	김성진	810301	병역법 위반	18월	249	김요섭	781102	항명	36월
200	김성현	800917	항명	36월	250	김용권	790123	항명	36월
201	김성호	791016	항명	36월	251	김용남	810204	병역법 위반	18월
202	김성호	810128	항명	36월	252	김용주	761208	항명	36월
203	김성환	790124	항명	36월	253	김용하	810304	병역법 위반	24월
204	김성환	790929	항명	36월	254	김용현	790629	항명	36월
205	김성훈	801118	항명	36월	255	김용호	810404	병역법 위반	18월
206	김성훈	790811	항명	36월	256	김용호	790101	항명	36월
207	김세진	780919	항명	36월	257	김우람	801226	항명	36월
208	김세현	800909	항명	30월	258	김우진	780730	항명	36월
209	김세호	811022	병역법 위반	18월	259	김우탁	800901	항명	36월
210	김수년	800725	항명	30월	260</td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281	김익환	800824	항명	36월	331	김준의	790801	항명	36월
282	김인걸	780529	항명	36월	332	김준칠	811025	병역법 위반	18월
283	김인명	800525	항명	36월	333	김준하	791014	항명	36월
284	김인섭	771005	항명	36월	334	김지남	800218	항명	36월
285	김인식	801116	항명	36월	335	김지연	740721	항명	36월
286	김인철	790529	항명	36월	336	김지웅	790418	항명	36월
287	김인태	800320	항명	36월	337	김지원	810120	병역법 위반	18월
288	김자열	790904	항명	36월	338	김지현	800211	항명	36월
289	김재구	801217	항명	36월	339	김지현	800704	항명	36월
290	김재만	781101	항명	36월	340	김지환	800321	항명	36월
291	김재민	800205	항명	36월	341	김지훈	800224	항명	36월
292	김재우	751114	항명	36월	342	김진규	800530	항명	36월
293	김재윤	790819	항명	36월	343	김진석	780831	병역법 위반	18월
294	김재진	791015	항명	36월	344	김진섭	791019	항명	36월
295	김재진	801115	항명	36월	345	김진성	790827	항명	36월
296	김정남	801221	항명	36월	346	김진수	810328	병역법 위반	18월
298	김정민	790311	항명	36월	348	김진우	800326	병역법 위반	18월
299	김정민	791027	항명	36월	349	김진우	791127	항명	36월
297	김정민	800712	항명	36월	347	김진우	800902	항명	36월
300	김정수	791113	항명	36월	350	김진욱	760429	항명	36월
301	김정수	790725	항명	36월	351	김진웅	800212	항명	36월
302	김정은	790210	항명	36월	352	김진태	810717	병역법 위반	18월
303	김정인	800130	항명	36월	353	김진혁	780820	항명	36월
304	김정태	791005	항명	36월	354	김진호	800512	항명	36월
305	김정표	790720	항명	36월	355	김진화	791123	항명	36월
310	김정환	810108	병역법 위반	18월	360	김창용	810520	병역법 위반	18월
306	김정환	800802	항명	36월	356	김진훈	810901	항명	36월
307	김정환	790613	항명	36월	357	김찬주	791015	항명	36월
308	김정환	790315	항명	36월	358	김찬호	770927	항명	36월
309	김정환	810630	항명	36월	359	김창수	790809	항명	36월
311	김정훈	790610	항명	36월	361	김창주	800118	항명	36월
312	김정훈	790116	항명	36월	362	김창준	810129	항명	36월
313	김정훈	770324	항명	36월	363	김창현	790322	항명	36월
314	김종구	790613	항명	36월	364	김창환	801112	항명	36월
315	김종국	790821	항명	36월	365	김청용	760430	항명	36월
316	김종근	810203	병역법 위반	18월	366	김치우	810217	병역법 위반	24월
317	김종락	800209	항명	36월	367	김태규	790303	항명	36월
318	김종석	760515	항명	36월	368	김태균	800215	항명	36월
319	김종원	800210	항명	36월	369	김태우	801027	항명	36월
320	김종준	800102	병역법 위반	18월	370	김태옥	780328	항명	36월
321	김종현	800208	항명	36월	371	김태준	790506	항명	36월
322	김종현	811022	병역법 위반	24월	372	김태진	790720	항명	36월
323	김종호	800624	항명	36월	373	김태철	791231	항명	36월
324	김좌근	791106	병역법 위반	24월	374	김태현	800224	항명	36월
325	김주석	801118	병역법 위반	18월	375	김태현	790617	항명	36월
326	김주환	781112	병역법 위반	18월	376	김태훈	791212	항명	36월
330	김주환	810610	항명	36월	380	김준용	761030	항명	36월
327	김준식	800717	병역법 위반	24월	377	김태훈	790405	항명	36월
328	김준영	750708	항명	36월	378	김평집	800513	항명	30월
329	김준완	781124	항명	18월	379	김하연	810820	병역법 위반	18월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430	김한국	811230	병역법 위반	24월	480	나원길	810628	항명	36월
381	김한아름	791203	항명	36월	431	나진원	790901	항명	18월
382	김행주	810407	항명	36월	432	나효상	790820	항명	36월
383	김 혁	800223	항명	36월	433	남 덕	780518	항명	36월
384	김 혁	761218	항명	36월	434	남평원	800721	항명	36월
385	김 현	790807	항명	36월	435	남궁갑	790127	항명	36월
386	김현규	810519	병역법 위반	24월	436	남동완	780427	항명	36월
387	김현서	800129	항명	36월	437	남명신	800820	항명	36월
388	김현석	800217	항명	36월	438	남상열	810208	항명	36월
389	김현석	790723	항명	36월	439	남석균	791118	항명	36월
390	김현승	811226	항명	36월	440	남선형	790301	항명	36월
391	김현우	800425	항명	36월	441	남성준	800827	항명	36월
392	김현우	800801	항명	36월	442	남윤희	791110	항명	36월
393	김현우	791112	항명	36월	443	남찬희	800822	항명	36월
394	김현욱	791121	항명	36월	444	노경민	790126	항명	36월
396	김현중	800209	항명	36월	446	노경태	800106	병역법 위반	18월
395	김현일	790709	항명	36월	445	노경태	791210	항명	36월
397	김현진	810426	병역법 위반	18월	447	노량진	790923	항명	36월
398	김현태	800713	항명	36월	448	노병일	810602	항명	30월
399	김현호	800625	항명	36월	449	노병현	781010	항명	36월
400	김현호	801110	병역법 위반	18월	450	노상래	800115	항명	36월
401	김형구	791127	항명	36월	451	노상호	790429	항명	36월
402	김형덕	790903	항명	36월	452	노성전	791118	항명	36월
403	김형민	800428	항명	36월	453	노세현	800619	항명	36월
404	김형석	790805	항명	36월	454	노신영	810629	항명	36월
405	김형석	770929	항명	36월	455	노용희	760425	항명	36월
406	김형욱	790614	항명	36월	456	노원민	810302	항명	36월
407	김형조	790228	항명	36월	457	노원빈	740715	항명	36월
408	김형준	800818	항명	36월	458	노윤철	810603	병역법 위반	18월
409	김형준</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501	박경석	790106	항명	36월	551	박 실	791023	항명	36월
530	문성진	790601	항명	30월	580	박상율	790428	항명	36월
483	문수창	800317	항명	30월	533	박상현	790508	항명	36월
484	문승원	791115	항명	36월	534	박상현	790506	항명	36월
482	문세환	800121	항명	36월	532	박상현	800418	항명	36월
481	문성진	780907	항명	36월	531	박상현	740728	항명	36월
485	문우영	791216	항명	36월	535	박석원	801110	항명	36월
486	문재민	791016	항명	36월	536	박성남	810210	항명	36월
487	문재성	800103	항명	36월	537	박성민	800613	항명	36월
488	문재원	750601	항명	36월	538	박성수	810204	항명	36월
489	문호연	790407	항명	36월	539	박성진	790206	항명	36월
490	문호연	790407	항명	36월	540	박성태	790622	항명	36월
491	문호진	760402	항명	36월	541	박세진	810211	항명	36월
492	민경성	810212	항명	36월	542	박세훈	810221	항명	36월
493	민경호	790617	항명	36월	543	박수현	810805	항명	18월
494	민경훈	790719	항명	36월	544	박순현	800925	항명	36월
495	민성옥	800120	항명	36월	545	박승수	790718	항명	36월
496	민성천	800827	항명	36월	546	박승한	801206	항명	36월
497	민준영	801101	항명	36월	547	박승현	790605	항명	36월
498	박 민	791214	항명	36월	548	박승호	770911	항명	36월
499	박경균	800301	항명	36월	549	박승희	810516	항명	36월
500	박경근	780927	병역법 위반	18월	550	박시종	790731	항명	36월
502	박경수	791030	항명	36월	552	박영주	800416	항명	36월
503	박경일	800907	항명	36월	553	박영찬	800312	항명	36월
504	박계동	800803	항명	36월	554	박용수	800506	항명	36월
505	박광진	790122	항명	36월	555	박용준	791005	항명	36월
507	박근우	801106	항명	36월	557	박용희	790619	항명	36월
506	박근형	810816	항명	36월	556	박용희	801115	항명	36월
508	박기훈	790219	항명	36월	558	박우빈	800708	항명	36월
509	박남수	810606	항명	36월	559	박우용	790710	항명	36월
510	박대광	800216	항명	36월	560	박원용	810522	항명	36월
511	박대범	790908	항명	36월	561	박원중	790125	항명	월
512	박대희	780107	항명	36월	562	박윤수	801107	항명	36월
513	박동수	810531	항명	36월	563	박은진	790410	항명	36월
514	박동진	800319	항명	36월	564	박의용	790714	항명	36월
515	박동철	750831	항명	36월	565	박인호	800102	항명	36월
516	박동혁	790210	항명	36월	566	박인후	801002	항명	36월
517	박두산	800108	항명	36월	567	박인희	800104	항명	36월
518	박득규	791105	항명	36월	568	박자윤	800119	항명	36월
519	박명철	800126	항명	36월	569	박재균	780718	항명	36월
520	박문환	791026	항명	36월	570	박재록	801121	항명	36월
521	박강균	810608	병역법 위반	18월	571	박재성	801208	항명	30월
522	박민규	811025	병역법 위반	18월	572	박정길	800414	항명	36월
523	박민규	800818	항명	36월	573	박정민	800710	항명	36월
525	박민서	800624	항명	36월	575	박정수	800101	항명	36월
524	박민규	800315	항명	36월	574	박정수	800430	항명	36월
526	박민수	801103	항명	18월	576	박정윤	810314	항명	36월
528	박상수	730111	항명	36월	578	박정현	800428	항명	36월
529	박상용	791207	항명	36월	579	박정현	790101	항명	36월
527	박민호	800301	항명	36월	577	박정현	810708	병역법 위반	18월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581	박정호	801119	항명	36월	631	방성필	780703	항명	36월
582	박정훈	800223	병역법 위반	18월	632	방지영	800818	병역법 위반	18월
583	박제정	810903	병역법 위반	18월	633	방현규	800913	항명	36월
584	박종숙	791106	항명	36월	634	방현진	781201	항명	36월
585	박종원	790628	항명	36월	635	배광민	770107	항명	36월
586	박종일	800329	항명	36월	636	배기성	800310	항명	36월
587	박종혁	801020	항명	36월	637	배민식	790422	항명	36월
588	박종혁	780813	항명	36월	638	배상보	801112	항명	36월
589	박종현	801212	항명	36월	639	배성원	790713	항명	36월
590	박종호	740104	항명	36월	640	배성운	800917	항명	36월
591	박주경	801022	항명	36월	641	배장현	810125	항명	36월
592	박주혁	811204	항명	30월	642	배정인	800121	항명	36월
593	박준범	810606	병역법 위반	18월	643	배종철	790410	항명	18월
594	박준상	800118	항명	36월	644	배지훈	801102	항명	36월
595	박준영	810429	항명	36월	645	백명기	810826	병역법 위반	18월
596	박준영	810406	항명	36월	646	백 민	790812	항명	36월
597	박준호	800114	항명	36월	647	백봉주	780923	항명	36월
598	박준희	800322	항명	36월	648	백승륜	810107	항명	36월
599	박지수	800227	항명	36월	649	백승열	770221	항명	36월
600	박지순	790831	항명	36월	650	백승원	800403	항명	36월
601	박지우	810827	병역법 위반	18월	651	백영기	791016	항명	36월
602	박지원	790903	항명	36월	652	백영민	800311	항명	36월
603	박지훈	800718	항명	36월	653	백재인	810414	병역법 위반	18월
604	박진성	780920	항명	36월	654	백종현	801109	항명	36월
605	박진우	790804	항명	36월	655	백형욱	790409	항명	36월
606	박진준	800816	항명	36월	656	변성우	810130	항명	36월
607	박진호	800201	항명	36월	657	변재원	791022	항명	36월
608	박찬열	801025	항명	36월	658	빅우진	800108	항명	36월
609	박찬영	750725	항명	36월	659	서광덕	800201	항명	36월
610	박창우	800818	항명	36월	660	서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681	서정원	810627	항명	30월	731	송호연	790829	항명	36월
682	서정체	810612	항명	36월	732	신경훈	790810	항명	36월
683	서정현	780218	항명	36월	733	신광식	791213	항명	36월
684	서종택	810726	병역법 위반	18월	734	신기봉	800221	항명	36월
685	서중석	791204	항명	36월	735	신기정	800104	항명	36월
686	서현호	791122	항명	36월	736	신길수	740226	항명	36월
687	서호종	810408	병역법 위반	18월	737	신낙원	790816	항명	36월
688	석대성	790706	항명	36월	738	신동근	790327	항명	36월
689	선상화	790828	항명	36월	739	신동길	790617	항명	36월
690	설광수	800408	항명	36월	740	신동영	780526	항명	36월
691	성영규	760315	항명	36월	741	신동철	791218	항명	36월
692	성정훈	790820	항명	36월	742	신동혁	801028	항명	36월
693	성태랑	790105	항명	36월	743	신명균	790914	항명	36월
694	성희영	750501	항명	36월	744	신명기	801019	항명	36월
695	소병한	791203	항명	36월	745	신명섭	800128	항명	36월
696	손경훈	781110	항명	36월	746	신명철	790817	항명	36월
697	손경훈	781110	항명	36월	747	신병곤	810813	병역법 위반	18월
698	손대평	790603	항명	36월	748	신봉석	790127	항명	36월
699	손병준	800303	병역법 위반	18월	749	신상민	791116	항명	36월
700	손상수	791217	항명	36월	750	신상일	790101	항명	36월
701	손성호	801225	항명	36월	751	신세진	790825	항명	36월
702	손성환	810110	병역법 위반	18월	752	신성덕	790728	항명	36월
703	손영재	810203	병역법 위반	18월	753	신성무	800825	항명	36월
704	손용만	781026	항명	36월	754	신성민	800402	항명	36월
705	손우진	810324	항명	36월	755	신성환	790728	항명	36월
706	손윤석	791204	항명	36월	756	신순호	801218	항명	36월
707	손의현	800809	항명	36월	757	신승경	801001	항명	36월
708	손일락	801118	병역법 위반	18월	758	신승규	791013	항명	36월
709	손일호	800917	항명	36월	759	신오성	800224	항명	36월
710	손재규	780825	항명	36월	760	신용현	801031	항명	36월
711	손지현	800622	항명	36월	761	신우근	801010	항명	36월
712	손호현	800308	항명	36월	762	신윤철	800930	항명	36월
713	송금석	800503	항명	36월	763	신은석	800831	항명	36월
714	송대영	790525	항명	36월	764	신의주	790707	병역법 위반	18월
715	송동욱	800514	항명	36월	765	신인성	770422	항명	36월
716	송명호	800710	병역법 위반	18월	766	신재승	790613	항명	36월
717	송민호	810127	병역법 위반	18월	767	신재우	790823	항명	36월
718	송민화	800115	항명	36월	768	신재창	790527	항명	36월
719	송상민	810110	항명	36월	769	신진곤	810621	항명	36월
720	송상호	780606	항명	36월	770	신진동	760916	항명	36월
721	송승권	800312	항명	36월	771	신진식	800917	항명	36월
722	송승훈	791025	병역법 위반	18월	772	신진익	810918	항명	36월
723	송요섭	790925	항명	36월	773	신태식	801104	항명	36월
724	송원경	800126	항명	36월	774	신현식	800917	병역법 위반	18월
725	송재운	791224	병역법 위반	18월	775	신현우	800214	병역법 위반	18월
726	송정근	791228	항명	36월	776	신홍근	790901	항명	36월
727	송준호	800815	항명	36월	777	신희웅	790203	항명	36월
728	송준호	800825	항명	36월	778	심인호	800506	항명	36월
729	송진우	801007	항명	36월	779	심일수	800212	항명	36월
730	송진우	791221	항명	36월	780	심재용	800516	항명	36월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781	심제현	800115	항명	36월	831	염진우	800510	항명	36월
782	심제호	801119	항명	36월	832	염철진	800509	항명	36월
783	심제훈	800616	항명	36월	833	예성호	810411	병역법 위반	18월
784	심종훈	810517	항명	36월	834	오강섭	810403	항명	36월
785	심준석	800419	항명	36월	835	오경진	781227	병역법 위반	18월
786	심창식	770813	항명	36월	836	오대산	790603	항명	36월
787	심현규	790110	항명	36월	837	오도현	800923	병역법 위반	18월
788	안현	790418	항명	36월	838	오두희	801224	항명	36월
789	안광찬	800520	항명	36월	839	오명철	790305	항명	36월
790	안기만	780525	항명	36월	840	오병주	800907	항명	36월
791	안동우	801214	항명	30월	841	오상민	810313	항명	36월
792	안성범	790728	항명	36월	842	오성민	810122	항명	36월
793	안성준	800925	병역법 위반	24월	843	오성원	800730	항명	30월
794	안성준	810413	병역법 위반	24월	844	오성철	790520	항명	36월
795	안승현	801010	항명	36월	845	오세언	790529	항명	36월
796	안용백	791027	항명	36월	846	오세준	780408	항명	36월
797	안재식	780121	항명	36월	847	오세현	810108	항명	36월
798	안재영	760312	항명	36월	848	오승현	800109	항명	36월
799	안재환	781223	항명	36월	849	오영국	780112	항명	36월
800	안재훈	790813	항명	36월	850	오영태	790901	항명	36월
801	안정훈	810916	병역법 위반	18월	851	오영훈	810530	항명	36월
802	안종선	800709	병역법 위반	18월	852	오완곤	790702	항명	36월
803	안철한	810223	항명	36월	853	오유석	800207	항명	36월
804	양원모	800601	항명	36월	854	오일환	800618	항명	36월
805	양원준	800120	항명	36월	855	오재관	800307	항명	36월
806	양인식	800226	항명	36월	856	오재우	800403	항명	36월
807	양일준	790228	항명	36월	857	오재현	790111	항명	36월
808	양재칠	810116	항명	36월	858	오정현	800816	항명	36월
809	양재훈	810818	병역법 위반	18월	859	오정호	791114	항명	36월
810	양정호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881	우형주	810925	항명	36월	931	윤승진	790529	항명	36월
882	원경석	791101	항명	36월	932	윤영운	800118	항명	36월
883	원상원	770508	항명	36월	933	윤영일	801003	항명	36월
884	원성규	800805	항명	36월	934	윤영준	800605	항명	36월
885	원영호	791124	항명	36월	935	윤영호	810112	항명	36월
886	원종원	790210	병역법 위반	24월	936	윤장혁	790725	항명	36월
887	원종율	800410	항명	36월	937	윤재민	801227	항명	36월
888	유기체	800220	항명	36월	938	윤재호	791109	항명	36월
889	유기형	800220	항명	36월	939	윤재훈	801225	항명	36월
890	유덕훈	811028	항명	30월	940	윤정옥	810614	병역법 위반	18월
891	유동욱	810627	병역법 위반	18월	941	윤정환	810110	항명	36월
892	유명랑	801103	항명	36월	942	윤종규	791109	항명	36월
893	유백민	820202	항명	30월	943	윤종언	801123	항명	36월
894	유병조	800311	항명	36월	944	윤주현	800402	항명	36월
895	유상식	800818	항명	36월	945	윤준혁	790626	항명	36월
896	유상훈	790305	항명	36월	946	윤진수	800604	항명	36월
897	유성훈	801212	항명	36월	947	윤현국	803012	항명	36월
898	유승건	800706	병역법 위반	18월	948	윤현철	770527	항명	36월
899	유승렬	800106	항명	36월	949	윤혜성	810122	병역법 위반	18월
900	유승제	801028	항명	36월	950	윤희찬	790324	항명	36월
901	유승호	800930	항명	36월	951	음명진	800119	항명	36월
902	유시현	800117	항명	36월	952	음우성	780218	항명	36월
903	유영민	810501	병역법 위반	18월	953	이 백	770516	항명	36월
904	유완선	791007	항명	36월	954	이 원	781008	항명	36월
905	유용기	800717	항명	36월	955	이갈렙	790423	항명	36월
906	유재원	800801	항명	36월	956	이강희	770520	항명	36월
907	유재현	801104	항명	36월	957	이 건	790310	항명	36월
908	유정	780405	항명	36월	958	이경로	791109	항명	36월
909	유종혁	811012	병역법 위반	18월	959	이경수	790313	항명	36월
910	유지원	801129	항명	36월	960	이경종	800530	항명	36월
911	유지학	810208	병역법 위반	18월	961	이경태	800123	병역법 위반	18월
912	유지현	791026	병역법 위반	18월	962	이광수	790325	항명	36월
913	유지훈	811020	병역법 위반	18월	963	이광언	790715	항명	36월
914	유진승	760814	항명	36월	964	이광준	800116	항명	36월
915	유한주	801104	항명	36월	965	이광훈	780503	항명	36월
916	유현종	811010	항명	36월	966	이국현	800819	항명	36월
917	유현호	800915	항명	36월	967	이규남	790629	항명	36월
918	유현호	790404	항명	36월	968	이규철	800701	병역법 위반	18월
919	유희락	790104	항명	36월	969	이기용	791118	항명	36월
920	육인석	810129	병역법 위반	18월	970	이나성	801108	항명	36월
921	육인수	781006	항명	36월	971	이낙근	800421	병역법 위반	24월
922	윤경웅	810727	병역법 위반	18월	972	이낙원	800926	병역법 위반	18월
923	윤근	791206	항명	36월	973	이대규	800202	항명	36월
924	윤기덕	760822	항명	36월	974	이대연	801116	항명	36월
925	윤기성	800817	항명	36월	975	이대우	800229	항명	36월
926	윤두현	800903	항명	36월	976	이대현	801120	항명	36월
927	윤석대	810220	병역법 위반	18월	977	이덕희	791205	항명	36월
928	윤성목	780724	항명	36월	978	이도연	790128	항명	36월
929	윤성진	800228	항명	36월	979	이도영	771010	항명	36월
930	윤수완	810313	항명	36월	980	이동규	800121	병역법 위반	18월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981	이동우	800820	항명	36월	1031	이승환	801030	항명	월
982	이동원	800808	항명	36월	1032	이시원	810715	병역법 위반	18월
983	이동진	800706	항명	36월	1033	이시한	800116	항명	36월
984	이동현	800115	항명	36월	1034	이신후	790130	항명	36월
985	이동훈	800727	항명	36월	1035	이아름	790529	항명	36월
986	이동훈	790125	항명	36월	1036	이양수	810716	항명	36월
987	이두환	801011	항명	36월	1037	이연규	810205	항명	36월
988	이병권	780303	항명	36월	1038	이영규	810319	항명	36월
989	이명운	800202	항명	36월	1039	이영근	800212	항명	36월
990	이명진	800226	항명	36월	1040	이영락	801111	항명	30월
991	이명진	810913	병역법 위반	18월	1041	이영옥	800724	항명	36월
992	이민구	790418	항명	36월	1042	이영인	811130	병역법 위반	18월
993	이민구	800228	항명	36월	1043	이영준	780227	항명	36월
994	이민규	800609	항명	36월	1044	이영호	801107	항명	36월
995	이민성	790909	병역법 위반	18월	1045	이완재	800717	항명	36월
996	이민숙	801217	항명	36월	1046	이용석	800726	항명	36월
997	이병광	800917	항명	36월	1047	이용옥	790514	항명	36월
998	이병렬	800701	항명	36월	1048	이용재	810123	항명	36월
999	이봉수	800909	항명	36월	1049	이용철	800625	항명	36월
1000	이봉안	800528	항명	36월	1050	이용현	801221	항명	36월
1001	이상국	790326	항명	36월	1051	이용호	791115	항명	36월
1002	이상민	771201	항명	36월	1052	이용규	800304	항명	36월
1003	이상민	810424	항명	36월	1053	이응재	791022	항명	36월
1004	이상순	790730	항명	36월	1054	이윤상	790327	항명	36월
1005	이상윤	780427	항명	36월	1055	이윤상	790327	항명	36월
1006	이상인	790926	항명	36월	1056	이율영	790720	항명	36월
1007	이상진	810131	항명	36월	1057	이의신	800407	항명	36월
1008	이상현	800111	항명	30월	1058	이의원	790708	항명	36월
1009	이상현	800219	항명	36월	1059	이이범	780517	항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1081	이정훈	800205	항명	36월	1131	이형선	800514	항명	36월
1082	이정훈	791023	항명	36월	1132	이형수	801230	병역법 위반	월
1083	이종규	800616	항명	36월	1133	이혜욱	780704	항명	36월
1084	이종백	810103	항명	36월	1134	이혜령	800603	항명	36월
1085	이종선	780210	항명	36월	1135	이혜숙	790126	항명	36월
1086	이종섭	780117	항명	36월	1136	이호창	801201	항명	36월
1087	이종수	800612	항명	36월	1137	이홍주	801001	병역법 위반	18월
1088	이종식	790512	병역법 위반	18월	1138	이희광	790210	항명	36월
1089	이종은	761030	항명	36월	1139	이효성	791230	항명	36월
1090	이준호	791113	항명	36월	1140	이효진	800206	항명	36월
1091	이지명	811216	병역법 위반	18월	1141	이훈재	810912	병역법 위반	18월
1092	이지우	790905	항명	30월	1142	일준희	810207	항명	36월
1093	이지현	761202	항명	36월	1143	임인	800422	항명	36월
1094	이지훈	800102	항명	36월	1144	임강혁	771229	항명	36월
1095	이지훈	790723	항명	36월	1145	임규훈	800327	항명	36월
1096	이진석	790707	항명	36월	1146	임기성	810131	항명	36월
1097	이진욱	770202	항명	36월	1147	임동수	790430	항명	36월
1098	이진웅	800614	항명	36월	1148	임동우	801118	항명	36월
1099	이진하	800526	항명	36월	1149	임동준	810809	병역법 위반	18월
1100	이진혁	810802	병역법 위반	18월	1150	임동춘	810110	병역법 위반	24월
1101	이찬영	801017	항명	36월	1151	임두현	800522	항명	36월
1102	이찬희	800215	병역법 위반	18월	1152	임명진	801212	항명	18월
1103	이춘근	791018	항명	36월	1153	임상준	810502	항명	36월
1104	이충선	770228	항명	36월	1154	임성배	810506	병역법 위반	24월
1105	이충성	800504	항명	36월	1155	임성철	800211	항명	36월
1106	이충원	790220	항명	36월	1156	임성준	800805	항명	36월
1107	이충환	800902	병역법 위반	18월	1157	임성태	800715	항명	36월
1108	이충희	810804	병역법 위반	18월	1158	임용모	800221	항명	36월
1109	이치우	791002	항명	36월	1159	임의선	800930	항명	36월
1110	이태규	790709	항명	36월	1160	임재석	790213	항명	36월
1111	이태범	800128	항명	36월	1161	임재현	790827	항명	36월
1112	이태승	790513	항명	36월	1162	임재화	790630	항명	36월
1113	이태양	810507	항명	36월	1163	임정완	791207	항명	36월
1114	이태원	791114	항명	36월	1164	임정일	800619	항명	36월
1115	이태준	790514	항명	36월	1165	임정훈	800115	항명	36월
1116	이태환	790611	항명	36월	1166	임종윤	801106	병역법 위반	24월
1117	이한우	790222	항명	36월	1167	임지완	800315	항명	36월
1118	이해성	791226	항명	36월	1168	임진규	791110	항명	36월
1119	이해수	790906	항명	36월	1169	임진수	790918	항명	36월
1120	이해창	770630	항명	36월	1170	임창민	801019	항명	36월
1121	이현범	810906	병역법 위반	18월	1171	임철순	810203	항명	36월
1122	이현웅	791010	항명	36월	1172	임충웅	800201	항명	36월
1123	이현우	791224	항명	36월	1173	임태규	800710	병역법 위반	18월
1124	이현우	791116	항명	36월	1174	임태홍	790504	항명	36월
1125	이현우	800106	항명	36월	1175	임현승	781106	항명	36월
1126	이현웅	800218	항명	36월	1176	임현조	800214	항명	36월
1127	이현진	791018	항명	36월	1177	임형욱	810301	병역법 위반	18월
1128	이협	800625	항명	36월	1178	임호연	790317	항명	36월
1129	이행노	801121	항명	36월	1179	장원	810309	항명	36월
1130	이형산	800315	항명	36월	1180	장경석	781119	항명	36월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1181	장경완	810720	병역법 위반	18월	1231	전성덕	791210	항명	36월
1182	장광현	800204	항명	30월	1232	전성민	790725	항명	36월
1183	장대일	800901	항명	36월	1233	전성배	790315	항명	36월
1184	장도산	791210	항명	36월	1234	전성하	800613	항명	36월
1185	장동원	791127	항명	36월	1235	전영민	790819	항명	36월
1186	장병윤	760226	병역법 위반	18월	1236	전완	801221	항명	36월
1187	장봉길	800215	항명	36월	1237	전용문	790820	항명	36월
1188	장상훈	801003	항명	36월	1238	전용우	800130	항명	36월
1189	장서경	800517	항명	36월	1239	전용택	790712	항명	36월
1190	장석환	800124	항명	36월	1240	전용환	810313	병역법 위반	18월
1191	장설	780615	병역법 위반	18월	1241	전주현	790105	병역법 위반	18월
1192	장성대	791011	항명	36월	1242	전지수	800901	항명	36월
1193	장성두	800420	항명	36월	1243	전진훈	800903	항명	36월
1194	장성원	790824	항명	36월	1244	전찬규	790930	항명	36월
1195	장성주	790919	항명	36월	1245	전창영	791211	항명	36월
1196	장세옥	800426	항명	36월	1246	전충실	790907	항명	36월
1197	장수호	790601	항명	36월	1247	전호민	800307	항명	36월
1198	장수훈	770111	항명	36월	1248	전호성	810307	항명	36월
1199	장승세	790826	항명	36월	1249	전호영	790913	항명	36월
1200	장왕국	790812	항명	36월	1250	전홍민	800207	항명	36월
1201	장용선	790221	항명	36월	1251	정석	800123	항명	36월
1202	장원재	780513	항명	36월	1252	정현	801219	항명	36월
1203	장윤덕	800131	항명	36월	1253	정현	800701	항명	36월
1204	장의현	780513	항명	36월	1254	정건영	770816	항명	36월
1205	장인석	790719	항명	36월	1255	정광빈	781004	항명	36월
1206	장인철	791121	항명	36월	1256	정교훈	801015	항명	36월
1207	장재구	790515	항명	36월	1257	정근호	801024	항명	36월
1208	장종원	810612	병역법 위반	18월	125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1281	정세광	790920	항명	36월	1331	조장원	790603	항명	36월
1282	정세진	810119	병역법 위반	24월	1332	조재우	780718	항명	36월
1283	정승재	800110	병역법 위반	18월	1333	조제연	800708	항명	36월
1284	정시백	830514	병역법 위반	18월	1334	조준례	800807	항명	36월
1285	정연우	790126	항명	36월	1335	조준표	771008	병역법 위반	18월
1286	정영관	780115	항명	36월	1336	조준형	790518	항명	36월
1287	정우석	790830	항명	36월	1337	조중환	810521	항명	36월
1288	정우성	801130	병역법 위반	18월	1338	조철우	801221	항명	36월
1289	정윤용	791128	항명	36월	1339	조혜억	810108	항명	36월
1290	정은철	791128	항명	36월	1340	조현대	790207	항명	36월
1291	정인수	770201	항명	36월	1341	조현주	780507	항명	36월
1292	정재영	790715	항명	36월	1342	조현철	800527	항명	36월
1293	정정일	800523	항명	36월	1343	조혜남	790204	항명	36월
1294	정주원	810601	병역법 위반	18월	1344	조홍룡	791216	항명	36월
1295	정주철	771002	항명	36월	1345	조희립	790915	항명	36월
1296	정준모	810426	항명	36월	1346	주영훈	790608	항명	36월
1297	정지수	800225	항명	36월	1347	주영훈	800807	항명	36월
1298	정지훈	790311	항명	36월	1348	주은철	780822	항명	36월
1299	정태우	760203	병역법 위반	18월	1349	주화철	800530	항명	36월
1300	정태희	790701	항명	36월	1350	지명구	780707	항명	36월
1301	정하석	740101	항명	36월	1351	지명욱	810415	항명	36월
1302	정현민	770627	항명	36월	1352	지승규	801217	항명	36월
1303	정형진	801006	항명	36월	1353	지승준	790916	항명	36월
1304	정호영	800823	항명	36월	1354	지운	800610	항명	36월
1305	정호영	780203	항명	36월	1355	지창원	801009	항명	36월
1306	정회칠	780316	항명	36월	1356	지현종	791227	항명	36월
1307	제갈용	810629	병역법 위반	18월	1357	진경덕	810117	병역법 위반	18월
1308	조광식	800812	항명	36월	1358	진민관	800818	항명	36월
1309	조덕현	790310	항명	36월	1359	진성훈	761012	항명	36월
1310	조동주	800103	항명	36월	1360	진수현	810916	항명	36월
1311	조동휘	800412	항명	36월	1361	진영록	750731	병역법 위반	18월
1312	조명정	760511	항명	36월	1362	진종우	790211	항명	36월
1313	조무현	790905	항명	36월	1363	차동석	801015	항명	36월
1314	조문희	780426	항명	36월	1364	차영기	800312	항명	30월
1315	조민규	780619	항명	36월	1365	차영재	800403	항명	36월
1316	조민석	810422	항명	30월	1366	차원기	800808	항명	36월
1317	조민수	790820	항명	36월	1367	차윤기	770416	항명	24월
1318	조성민	810723	병역법 위반	18월	1368	차재환	781219	항명	36월
1319	조성연	800913	항명	36월	1369	차형석	801229	항명	36월
1320	조성현	810118	항명	36월	1370	채명석	780516	항명	36월
1321	조성현	780728	항명	36월	1371	채우현	800627	항명	36월
1322	조성호	780414	항명	36월	1372	채진호	801205	항명	36월
1323	조영상	790802	항명	36월	1373	천재희	801206	항명	36월
1324	조영진	810321	병역법 위반	18월	1374	천주환	810112	항명	36월
1325	조용석	800220	항명	36월	1375	최준	780108	항명	36월
1326	조우철	780719	항명	36월	1376	최규태	790806	항명	36월
1327	조육제	810811	병역법 위반	24월	1377	최기섭	801012	항명	36월
1328	조윤우	790621	항명	30월	1378	최기웅	780324	항명	36월
1329	조인성	800111	항명	36월	1379	최기원	800514	병역법 위반	18월
1330	조인창	800509	항명	36월	1380	최기철	800620	항명	36월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1381	최기태	800622	항명	36월	1431	최정현	790920	항명	36월
1382	최길표	801010	항명	36월	1432	최종엽	800825	항명	36월
1383	최남일	790820	항명	36월	1433	최종철	800124	항명	36월
1384	최대근	780513	항명	36월	1434	최종필	790723	항명	36월
1385	최대웅	800212	항명	36월	1435	최준석	801227	항명	36월
1386	최명섭	731111	항명	36월	1436	최준영	801009	항명	36월
1387	최명진	790920	항명	36월	1437	최준웅	810203	항명	36월
1388	최민규	790514	항명	36월	1438	최중권	800422	항명	36월
1389	최민규	790815	항명	36월	1439	최지홍	790219	항명	36월
1390	최민석	791225	항명	36월	1440	최지훈	810026	병역법 위반	18월
1391	최민석	810926	병역법 위반	18월	1441	최진현	810704	항명	36월
1392	최민종	800701	항명	36월	1442	최진호	801108	항명	36월
1393	최병옥	791210	항명	36월	1443	최진호	790816	항명	36월
1394	최병옥	800202	항명	36월	1444	최찬영	801027	항명	36월
1395	최병진	800921	항명	36월	1445	최치원	800613	병역법 위반	18월
1396	최부관	790102	항명	36월	1446	최학수	800305	항명	36월
1397	최상용	790913	병역법 위반	36월	1447	최현명	780507	병역법 위반	18월
1398	최석일	790712	항명	36월	1448	최현수	760113	항명	36월
1399	최성남	790703	항명	36월	1449	최현우	800430	항명	36월
1400	최성민	791112	항명	36월	1450	최현웅	800331	항명	36월
1401	최성복	781101	항명	36월	1451	최현일	761231	항명	36월
1402	최성우	790123	항명	36월	1452	최석준	800715	항명	36월
1403	최성진	771218	항명	18월	1453	탁정민	791201	항명	36월
1404	최성호	750223	항명	36월	1454	태원욱	800713	항명	30월
1405	최성호	800802	항명	36월	1455	표상길	790903	항명	36월
1406	최성훈	800411	항명	36월	1456	표성완	810304	항명	36월
1407	최수용	790315	항명	36월	1457	하경종	800404	항명	36월
1408	최승일	801006	항명	36월	1458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성명	생년월일	죄명	형량
1485	함종엽	770413	항명	36월	1508	홍양일	790120	항명	36월
1486	허창	800203	항명	36월	1509	홍일민	790425	항명	36월
1487	허남진	801015	항명	36월	1510	홍재권	801223	항명	36월
1488	허대훈	800113	항명	36월	1511	홍제옥	780630	항명	36월
1489	허명철	800927	항명	36월	1512	홍진영	770624	항명	36월
1490	허목록	781005	항명	36월	1513	홍태규	791222	항명	36월
1491	허승필	801016	항명	36월	1514	홍현철	800412	항명	36월
1492	허용	790619	항명	36월	1515	황경연	800228	항명	36월
1493	허용근	800117	항명	36월	1516	황규선	800725	항명	36월
1494	허일	800403	항명	36월	1517	황금동	760621	항명	36월
1495	허지훈	800220	항명	36월	1518	황백엽	790829	항명	36월
1496	현동석	790613	항명	36월	1519	황병윤	790628	항명	36월
1497	현영욱	791225	항명	36월	1520	황보찬우	791108	병역법 위반	18월
1498	현진욱	791001	항명	36월	1521	황상호	800228	항명	36월
1499	홍훈	800430	항명	36월	1522	황순웅	790106	항명	36월
1500	홍경룡	801120	병역법 위반	18월	1523	황용익	801013	항명	30월
1501	홍금룡	790514	항명	36월	1524	황운봉	800107	병역법 위반	24월
1502	홍기진	800315	병역법 위반	18월	1525	황운용	770615	항명	36월
1503	홍동선	800320	항명	36월	1526	황유진	800305	항명	36월
1504	홍동욱	801212	항명	36월	1527	황일상	790616	항명	36월
1505	홍동진	810615	병역법 위반	18월	1528	황일홍	781018	항명	36월
1506	홍성복	810215	항명	36월	1529	황주용	790101	항명	36월
1507	홍성재	790820	항명	36월	1530	황주현	800301	항명	36월
1481	한창훈	790506	항명	36월	1531	황준철	770211	항명	36월
1482	한철환	800227	항명	36월	1532	황진한	800417	항명	36월
1483	한태규	800604	항명	36월	1533	황현철	790810	항명	36월
1484	한혁수	800526	항명	36월	1534	황호규	800204	항명	36월

□ 미결

	성명	생년월일	죄명		성명	생년월일	죄명		성명	생년월일	죄명
1535	강종현	810330	병역법 위반	1571	박성환	811030	병역법 위반	1607	이종욱	810804	병역법 위반
1536	강태민	810201	병역법 위반	1572	박승기	800227	병역법 위반	1608	이준호	810803	병역법 위반
1537	고성은	800806	병역법 위반	1573	박주오	810129	병역법 위반	1609	이지엽	800209	항명
1538	곽승훈	810612	병역법 위반	1574	박준호	810712	병역법 위반	1610	이현성	810510	병역법 위반
1539	구민석	810805	병역법 위반	1575	박환우	810425	병역법 위반	1611	이현우	811005	병역법 위반
1540	구범철	810227	병역법 위반	1576	백낙원	810701	병역법 위반	1612	이현진	800205	병역법 위반
1541	권재현	810129	병역법 위반	1577	서지웅	810817	병역법 위반	1613	임동혁	811022	병역법 위반
1542	권효상	800210	항명	1578	성제현	810823	병역법 위반	1614	장석희	810621	병역법 위반
1543	김현	810909	병역법 위반	1579	송형근	811008	병역법 위반	1615	장영진	800612	병역법 위반
1544	김남호	810322	병역법 위반	1580	신동균	811004	병역법 위반	1616	장효선	801221	병역법 위반
1545	김덕우	810302	병역법 위반	1581	신종민	811102	병역법 위반	1617	전홍기	810616	병역법 위반
1546	김보람	810511	병역법 위반	1582	심규철	800206	병역법 위반	1618	정성욱	740627	병역법 위반
1547	김상건	810621	병역법 위반	1583	안원호	790922	병역법 위반	1619	정재홍	800119	병역법 위반
1548	김성곤	811001	병역법 위반	1584	안창규	800923	병역법 위반	1620	정진우	810412	병역법 위반
1549	김성관	791001	병역법 위반	1585	양재훈	810818	병역법 위반	1621	정철진	810507	병역법 위반
1550	김성훈	810908	병역법 위반	1586	오건	811004	병역법 위반	1622	조영민	811101	항명
1551	김신원	790512	병역법 위반	1587	오덕균	810917	병역법 위반	1623	조오영	800516	병역법 위반
1552	김연호	790617	병역법 위반	1588	옹상현	811207	병역법 위반	1624	조정수	811005	병역법 위반
1553	김영민	811023	병역법 위반	1589	원체현	810717	병역법 위반	1625	조차행	820119	병역법 위반
1554	김영선	800927	병역법 위반	1590	원홍연	811104	병역법 위반	1626	조현진	810621	병역법 위반
1555	김원의	811120	병역법 위반	1591	유석민	810703	병역법 위반	1627	주진일	810121	병역법 위반
1556	김의기	810930	병역법 위반	1592	유승환	810130	병역법 위반	1628	차태훈	811226	병역법 위반
1557	김정원	790801	병역법 위반	1593	유조화	811216	병역법 위반	1629	차형석	811224	병역법 위반
1558	김정현	810528	병역법 위반	1594	윤기락	780522	병역법 위반	1630	최민수	810421	병역법 위반
1559	김주혁	790207	병역법 위반	1595	윤성현	801103	병역법 위반	1631	최용희	800905	병역법 위반
1560	김준섭	810912	병역법 위반	1596	이경수	810125	병역법 위반	1632	최유석	800510	병역법 위반
1561	김태년	810723	병역법 위반	1597	이병훈	810805	병역법 위반	1633	최운영	811017	병역법 위반
1562	김현일	810814	병역법 위반	1598	이상은	811026	병역법 위반	1634	최인영	811017	병역법 위반
1563	문현철	810316	병역법 위반	1599	이상훈	811008	병역법 위반	1635	최종원	801203	병역법 위반
1564	박가리온	810921	병역법 위반	1600	이수용	810421	병역법 위반	1636	최혁민	800324	병역법 위반
1565	박건양	801024	병역법 위반	1601	이영근	800315	병역법 위반	1637	한영진	800212	병역법 위반
1566	박경문	810415	병역법 위반	1602	이영석	800101	병역법 위반	1638	허성문	811227	병역법 위반
1567	박대근	800702	병역법 위반	1603	이원호	810327	병역법 위반	1639	홍거상	770303	병역법 위반
1568	박병권	810909	병역법 위반	1604	이재철	810703	병역법 위반	1640	황병현	810302	병역법 위반
1569	박병선	811021	병역법 위반	1605	이정숙	811213	병역법 위반				
1570	박상호	790807	병역법 위반	1606	이정복	801212	병역법 위반				

<부록 3>

가석방 심사신청 기준표

유형 및 누진급수별 기준표		제한사법 및 형집행률 90% 이상 제한사법					
누진계급		1급	2급	3급	제한사법		
무기수	초범	72%	77%	82%	1) 존속살인 등 일체의 살인죄 2) 강도 등 일체의 강도죄 3) 성폭력처벌법 및 강간 등 일체의 강간죄 4) 해결사 등 청부 폭력사범 5) 10억 원 이상 미 변제 또는 미 합의한 경제사범 6) 추징금 미납자 7) 형기종료 출소 후 1년 이내 재범자 (과실범 제외) 8)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자 (과실범 제외) 9) 수용생활 중 범행으로 추가형 선고자 10) 최근 1년 이내 규율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은 자 * 미수범, 방조범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적용		
	2범	77%	82%	87%			
	3범이상	82%	87%	제외			
장기수	초범	70%	75%	80%			
	2범	75%	80%	85%			
	3범이상	80%	85%	제외			
제한사범	초범	60%	65%	70%			
	2범	70%	75%	80%			
	3범이상	75%	80%	제외			
여호와의증인(군 항명수형자) 27개월(75%)이상 복역							
조직폭력, 가정파괴, 마약, 인신매매, 범죄단체조직사범		90%	제외	제외			
일반사범	초범	50%	55%	60%			
	2범	60%	65%	70%			
	3범이상	65%	70%	제외			
사범	유형		집행률		제한사법 (90% 이상)		
		초범	2범이상				
교통사범	상해	합의	50%	55%	1) 가정파괴범 2) 조직폭력사범 3) 범죄단체조직 4) 마약류사범		
		종합보험	55%	60%			
		미합의	60%	65%			
	사망	합의	55%	60%	5) 미성년자 약취유인, 영리 및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 기타 약취 유인 유괴 및 인신매매 행위 일체		
		종합보험	60%	65%			
		미합의	75%	80%			
교통사범 (도주차량)	사망	합의	65%	70%	* 소장 의견서 첨부하여 신청		
		종합보험	70%	75%			
		미합의	85%	90%			
급외유형		가급	나급	유형적용 기준			
급외자	중환자	50%	60%	* 일반사범과 교통사범(도주차량 포함) 경합시 교통사범(도주차량 포함) 적용			
	고령자(70세 이상)	55%	65%	* 제한사범과 교통사범(도주차량 포함) 경합시 중한형 적용			
	단기수(잔형기 6개월미만) 일반환자	65%	75%	* 일반사범과 제한사범 경합시 제한사범 적용 * 급외(중환자)와 여타사범 경합시 급외(중환자) 적용 * 제한사범(90% 이상)과 급외(중환자)를 제외한 여타사범 경합시 제한사범(90% 이상) 적용 * 장기수와 제한사범 경합시 장기수 적용 * 급외(단기수)와 제한사범 경합시 급외(단기수) 적용 * 교통사범의 경우 일부합의는 미합의 기준적용			
가석방 신청시기							
정기가석방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1월							
경축일 가석방 : 3·1절, 석탄일, 광복절, 개천절, 성탄일							
정기가석방 : 심사신청기준일 30일							

<부록 4>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에 대한 국방부 입장

2001년 10월23일

최근 언론에서 사회적 이슈로 다루고 있는 특정 종교집단의 병역거부 문제가 "우리 사회의 병역의무에 대한 전진한 상식과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국방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핵심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 국익보호 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전통, 안보여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병역거부자는 물론 세계 각국의 그들 어느 누구도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과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오히려, 누구나 부담하는 병역의무 즉, 기초군사훈련과 복무만료 후 8년간의 예비군 임무까지 모두 면제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역거부자들은 이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을 장기화하고 열악한 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복무기간이나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생명을 담보로 군복무를 할 것인가"라는 국가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는 물론 누구든지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도 안되지만 '특혜'를 부여하여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병역거부 또는 징병제 반대 등과 관련하여 모임을 결성하거나 국제연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병사들의 양심과 사기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병역거부 행위는 남북으로 분단된 특수한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들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수용할 수 없지만 병역거부 확산은 물론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 시비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의 안보환경과 징병제 병역제도 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부록 5〉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성명서

-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을 반대한다.

최근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공의근무 요원에 복무케 하되 복무기간을 장기화한다는 소위 '대체복무제'가 장영달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상 민주당)에 의해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며 사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이 대체복무제 입법 또는 병역법의 개정을 반대한다.

이 문제를 거론한 KBS와 MBC의 시사프로그램과 [한겨레21]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 배후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개입되어 있음과 그들을 위한 특혜입법임이 분명하다.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에서 발생한 기독교의 탈을 쓴 이단으로서 '집총거부(병역기피)', '수혈거부', '국기배례거부'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여호와의 증인이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기피는 이유는 국가와 정부를 사탄의 조직으로 보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상하는 전쟁에 참여하거나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식의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의 양심을 속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종교의 자유와 소수의 인권 보장을 내세워 여호와의 증인이 끼치는 폐해는 간과하고 마치 양심적인 종교인으로 포장하고 미화하는 발상은 위험한 것이다.

이 법안은 부작용이 클 것이다. 왜냐하면 살생을 금하는 종교도 있고 어느 종교든 전쟁이나 군 입대를 거부 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특화 하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도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종교의 자유에는 개종의 자유가 있는 만큼 중간에 종교를 바꾸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기 때문에 병역기피자의 도피처로 악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6월 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성환

〈부록 6〉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1000인 선언

지난해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집총을 할 수 없다는 여호와증인들의 사연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된 뒤 한국 사회에는 또 하나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널리 알려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존재가 그것이다. 이들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광범위한 종교적 편견과 전통적 국가안보관에 의해 국군 창설이래 1만 여명을 헤아리는 수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존재해 왔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는커녕 그 존재조차 감추어져 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란 자기 자신의 '양심'에 근거해 징집과 같은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를 행하는 자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대한민국 실정법을 어긴 죄인이 되어 교도소로 격리되어야만 했다.

현재 1,600여명에 이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전국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과의 딱지를 단 채 사회적 차별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보편적 가석방 기준에서도 제외되어 현역병 복무기간보다 긴 27개월 이상의 형을 살아야 비로소 가석방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부자가 대를 이어 복역을 하기도 하고 형제가 연이어 같은 이유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최근 이와 같은 병역거부자들에게 6개월의 형량을 감해주는 전향적인 판결이 있기도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거부자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가 무색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가 "내심에 그치는 한에서만 제약을 받지 않을 뿐이지, 양심이 소극적으로건 적극적으로건 외부로 표출될 때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보수적인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근본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는 약 40여 개 나라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헌법 및 각종 하위법을 통해 인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내 비전투분야 복무나 혹은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의 사회복지 기관에서 국방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에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양심에 기초한 이성과 원리에 따른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간 각종 결의안 등을 통해 각 국가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인정 및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도 마련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2000년 대만에서는 포괄적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현실을 크게 개선한 바 있다.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상황과 남성중심적인 병영국가이자 한국과 비슷한 처지의 대만에서 대체복무제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효율적 자원의 배분이라는 실리주의와 더불어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겠다는 이유

로 감옥에 수감되고 있는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결과이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는 헌법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체 병역의무자의 30%에 이르는 많은 수의 대체복무자들이 존재 한다. 또한 그 복무 분야도 사회복지 분야 전반으로 매우 확대되어 있으며 이들의 존재가 복지국가 독일을 건설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복무제도는 비단 대만, 독일뿐만 아니라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매년 600명 이상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총을 드는 대신 교도소로 향하고 있으며 1600여 명이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중이다. 징병제가 도입된 이래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이 문제가 비단 특정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양심과 실천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는 인권의 차원에서 출발한 사회적인 논의였기보다는 특정 종교의 고유한 행동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편협한 인식과 논의의 부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관련된 사회적 접근과 실천적 논의를 가로막아 왔다. 하지만 이미 공익근무요원, 병역특례제도 등 현 병역법에 보장된 각종 대체복무제도가 혼존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은 오히려 대만보다 더욱 빠른 진척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의 실현과 대체복무제 도입이 "남북대치 상황으로 인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에 기반 한 사회적 합의와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으며, 이미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가의 사례는 이러한 우려가 군사주의에 기반 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하는 국가권력과 사회·문화적 폭력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언제까지 이들의 양심을 철창 속에 가두어둘 생각인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같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사회, 인권국가가 짚어야 할 중요한 책임이다.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1. 국회와 정부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신청 기준상 차별 행위를 즉각 시정하라!
1.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에 반대한다. 오태양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실시하라!